

#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2025. 6. 2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6월 2일

나. 발 의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3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노상욱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신규위탁 개요

위탁시설명	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·2호점·3호점
위탁기간	2025.8.1.~2028.7.31.(3년 예정)
위탁사무 내용	-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」사업운영 및 시설관리 -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-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무
수탁자 선정방식	수의계약(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)

나. 소요예산 : 737백만원(구비) \* 3년간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세부 내역				비고
	합계	인건비	사업비	운영비	
합계	737	610	21	106	
2025년	104	85	3	16	5개월
2026년	245	203	7	35	
2027년	245	203	7	35	
2028년	143	119	4	20	7개월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필요성에 대해 구의회 동의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  -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위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음.

연번	시설명	위치	설치규모
1	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	신길3동 신청사 (가마산로 483)	91㎡, 2타석
2	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2호점	신길3동 구청사 (신길로41라길 13-8)	237㎡, 5타석
3	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3호점	대림1동 주민센터 (다저털로 441)	130㎡, 3타석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  - 본 위탁사무는 구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행위로 구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- 수탁자 선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에 의하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에서도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, 수의계약을 통해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를 선정·위탁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음.
  - 수탁 사유를 살펴보자면 실내파크골프장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은 고령층의 이

용이 많아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, 영등포구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및 실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기관으로 고령자·장애인 등의 실내체육 수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- 또한,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함.
- 다만,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,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53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5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 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신규위탁 개요

- 1) 위탁사무명: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」 운영
- 2) 추진근거
 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 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 3(공유재산의 대부 등)
 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)
 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3) 필요성: 구민들에게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,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- 4) 위탁사무 내용
  -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」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
  -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무

5) 시설현황

- 위탁시설명: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·2호점·3호점
- 위탁시설 및 사업내용

연 번	시 설 명	위 치	설 치 규 모
1	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	신길3동 신청사 (가마산로 483)	91㎡, 2타석
2	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2호점	신길3동 구청사 (신길로41라길 13-8)	237㎡, 5타석
3	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3호점	대림1동 주민센터 (다자털로 441)	130㎡, 3타석

6) 위탁기간: 3년('25. 8. 1. ~ '28. 7. 31. 예정)

7) 수탁자 선정방식: 수의계약

- 수탁업체: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
- 법적근거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 3(공유재산의 대부 등)
- 수탁사유
  - 실내파크골프장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은 고령층의 이용이 많아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, 공공성이 강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운영 필요
  -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및 실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기관으로, 고령자, 장애인 등의 실내체육 수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

8) 소요예산: 737백만원(구비) \* 3년간 추계

연 도 별	세 부 내 역			비 고	
	합 계	인건비	사업비		운영비
합 계	737	610	21	106	
2025년	104	85	3	16	5개월
2026년	245	203	7	35	
2027년	245	203	7	35	
2028년	143	119	4	20	7개월

#### 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

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
- 2)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
  - 본 사무는 국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행위로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
- 3)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  - 실내파크골프장 운영은 국민의 생활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
- 4)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
  - 국민들의 실내 체육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
  - 공무원 중심의 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수준 높은 체육서비스 제공 가능
- 5) 경제적 효율성
  - 민간의 운영 효율성을 통해 동일한 예산 대비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
  - 행정 부담 경감 및 민간 자원의 활용으로 재정부담 완화 효과 기대

### 3. 추진경과

가. '25. 02.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

나. '25. 03. 실내파크골프장 공사 착공

다. '25. 04. 실내파크골프장 공사 준공

라. '25. 05.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(의결 결과: 적정)

마. '25. 06.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

바. '25. 07.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

사. '25. 08.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위탁 운영(예정)

붙임: 관계법령 발췌 1부.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

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, 사용, 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(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)

제16조(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,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체육시설의 관리,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